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한정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818호)

2024.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	---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	---

1. 1인 자영업자인 지역가입자 대상 건강보험에서 출산수당 지급	3
--	---

I. 개요

1. 한정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818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한정애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4. 8. 14.

(3) 회 부 일 : 2024. 8. 16.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의 직장가입자인 근로자는 「고용보험법」상 근로자의 권리가 확대·강화됨에 따라 출산·유산·사산 시 고용보험을 통해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폭넓게 받게 되었음. 또한, 2021년 하반기부터는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등 고용관계가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안정하고 정형적이지 않은 사람들 역시 출산·유산·사산 시에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었음.

이처럼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받는 대상이 확대되고 있으나,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인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출산 등으로 인한 휴업이나 영업시간 단축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소득 상실을 보전할 수단이 없는 상황임.

이에 일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법」에 따라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을 수 없는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에서 출산수당을 지급

하도록 하고 이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여 출산 등으로 인해 일을 쉬게 되더라도 최소한의 생계수준이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신설 등).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1인 자영업자인 지역가입자 대상 건강보험에서 출산수당 지급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가입자의 출산, 유산 또는 사산으로 인하여 소득을 상실하거나 소득이 감소한 기간에 대하여 출산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되, 「고용보험법」 제75조·제76조의2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또는 같은 법 제77조의4·제77조의9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제외하도록 하고, 지급기간은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며,

해당 연도 출산수당 예상 지급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49조의2(출산수당) ① 공단은 가입자의 출산, 유산 또는 사산으로 인하여 소득을 상실하거나 소득이 감소한 기간에 대하여 출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75조·제76조의2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또는 같은 법 제77조의4·제77조의9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에게는 출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8조의2(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①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u>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u>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u><신 설></u> <u><신 설></u> ② (생 략) ③ 공단은 <u>제1항에 따라</u> 지원된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 3. (생 략) ④ (생 략)	② <u>제1항에 따른 출산수당의 지급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1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지급액으로 한다.</u> ③ <u>그 밖에 출산수당의 구체적인 지급대상, 지급기간, 지급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출산수당의 지급기간은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u> 제108조의2(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① ----- -----<u>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u>----- -----. 1. <u>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u> 2. <u>제49조의2에 따른 해당 연도 출산수당 예상 지급액에 상당하는 금액</u> ② (현행과 같음) ③ -----<u>제1항제1호</u>----- ----- -----. 1. ~ 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	---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나. 검토의견

□ 「고용보험법」 제75조¹⁾·제76조의²⁾에서는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7조의⁴⁾·제77조의⁹⁾에서는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출산전후급여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고용보험법」에서는 2005년 12월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제도가 도입되었고 자영업자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나,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지급되지 않고 있음

□ 개정안은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가입자의 출산, 유산 또는 사산으로 인하여 소득을 상실하거나 소득이 감소한 기간에 대하여

1) 「고용보험법」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1.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2) 「고용보험법」 제76조의2(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적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6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사산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해당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전부를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다.

3) 「고용보험법」 제77조의4(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술인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 등(이하 “출산전후급여 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하여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및 제77조의9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4) 「고용보험법」 제77조의9(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한다.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하여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또는 제77조의4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출산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되, 「고용보험법」 제75조·제76조의2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또는 같은 법 제77조의4·제77조의9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제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1인 자영업자인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건강보험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지급액에 해당하는 출산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⁵⁾,

해당 연도 출산수당 예상 지급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 「고용보험법」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을 받을 수 없는 1인 자영업자 등도 출산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 보전을 통해 최소한의 생계수준이 보장되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⁶⁾, 출산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급여

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등) ①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0호)

2.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선정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86,920원씩 증가(8인가구: 3,011,718원)

2) 최저보장수준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한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6)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

보전은 동법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참고로, 제21대 국회에서는 피보험자인 자영업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육아기간 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음.⁷⁾

다.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한 보험급여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나, 근로 공백으로 인한 소득 상실분에 대한 보장은 위와 같은 건강보험 제도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신중 검토한 검토가 필요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출산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 보전을 통해 최소한의 생계수준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함. 다만, 개정안의 내용은 질병, 부상 등에 대하여 급여를 실시하는 「국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7) 소병훈의원 대표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0310), 이주환의원 대표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6173)

민건강보험법」의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으며,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해 보임.

□ 대한의사협회

- 건강보험 제도 운영의 주목적은 질병의 진단·치료·예방에 두는 것이 합당하며, 출산수당 지급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우려가 있으나 국고지원 관련 규정에 ‘예상 수입액’과 ‘상당하는’이라는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여 지원 규모에 대한 예측가능성 및 명확성을 담보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함께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 및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문 의 처
02)6788-5503